

알고 계신가요?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

사업주가 해야 할 일



산업재해조사표

-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, 질병자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



안전·보건표지

- 유해·위험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경고, 비상조치 안내 등 안전·보건표지를 설치·부착



안전·보건교육

- 정기·신규 채용시·작업내용 변경시·특별교육



방호장치 점검

-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



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

-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취급의 유해·위험성 알림
(화학물질의 명칭, 함유량, 취급 주의사항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·비치)



작업환경측정

- 사업장 작업환경 실태 파악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



근로자 건강진단

-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



재해발생시 대피

-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

근로자가 해야 할 일



안전·보건조치 사항 준수

- 유해·위험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준수



안전·보건교육

-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·보건교육 참석



방호장치 상실 시 신고

-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장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



위급상황 시 작업중지 및 대피

-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중지 후 대피
- 작업중지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

*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.